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년월일 : 2006. 2.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 제13차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결정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이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상환기한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여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립기반확립과 소득수준향상을 도모
- 수혜범위를 한정지으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문구인 영세민을 삭제

##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2항(융자금대상)  
융자금대상 자금 명칭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한다.
- 조례 제9조제2항(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상환기한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 를 1회 1년이내로 하되 2회로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2006. 1. 19 ~ 2006. 2. 8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자대상) 제2항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를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2항 중 “1년 이내로 하되 1회”를 “1회 1년이내로 하되 2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3 조 (용자대상)</p> <p>① (생 략)</p> <p>②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p> <p>③ ~ ⑥ (생 략)</p>	<p>제 3 조 (용자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p> <p>-----</p> <p>-----</p> <p>-----</p> <p>-----</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 9 조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제 9 조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1회 1년이내로 하되 2회</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